

백영화 연구위원

### 요 약

엄격한 자격과 전문적 법률 지식을 갖추지 못한 자가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경우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음. 민원대행업체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보험료 반환, 해지환급금 청구, 보험금 청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음. 소비자들로서는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 등이 보험료 반환, 보험금 청구 등을 처리 해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음

○ 민원대행업체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지환급금 청구 관련 민원 업무 등을 취급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

-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해 대리, 중재, 화해,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함<sup>1)</sup>
  - 법률사건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생명, 신체, 명예, 재산 등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다툼이나 의문이 있는 사건으로서,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됨
  -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 한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임<sup>2)</sup>
  -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을 하고 있는바,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1)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6헌바96 결정 등

- 해당 사안에서는 A라는 민원대행업체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지환급금 청구 관련 민원 업무 등을 취급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 A업체는 보험계약자로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에 대한 의뢰를 받고, 계약금(10만 원) 및 컨설팅 수수료(환급금액의 10%)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의뢰계약서를 작성함
  - 그에 따라 A업체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등을 분석하고, 해지환급금 청구에 대한 민원 서류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송부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회사에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함

〈표 1〉 민원대행업체의 주요 영업행태

<b>Step 1 : 민원인 모집</b>
☞ 방송·SNS 홍보 및 민원대행업체 소속 직원의 대면영업을 통해 민원인에게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
<b>Step 2 : 컨설팅 및 계약</b>
☞ 컨설팅 명목으로 착수금(10만 원) 입금 요구 및 입금 시 온라인 계약서 작성
<b>Step 3 : 민원제기 업무 코칭</b>
☞ 정형화된 민원양식(불완전판매 유형 민원)에 민원인의 계약정보 등을 반영하여 민원인에게 금융회사·금융감독원 민원제기 업무 코칭
☞ 보험회사가 민원 수용 거부 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보험회사 압박
<b>Step 4 : 민원처리 완료</b>
☞ (민원 수용 시) 환급금의 약 10%를 성공보수로 요구 ※ 성공보수 미지급 시 '법적 처리' '내용증명' 등을 언급하며 민원인 압박
☞ (민원 불수용 시) 민원인 착수금 반환 없음

자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2021. 2. 15), “서울남부지법, 불법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이에 대해 법원은, A업체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1심 법원은 A업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sup>3)</sup>,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음<sup>4)</sup>, 2022년 6월 대법원에서도 A업체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변호사법 위반죄가 확정되었음<sup>5)</sup>
  - 법원은, A업체가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그 해지환급금의 지급이라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이며, 특히 민사상 권리의무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한 것은 법률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에 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고정1409 판결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490 판결

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078 판결

○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으나<sup>6)</sup>,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이에서 나아가 보험금을 대리청구하거나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는 금지됨<sup>7)</sup>
- 실제로 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거나 보험금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 또는 유도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많음
  -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해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임
  -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행하거나 보험금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임

〈표 2〉 손해사정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례 유형<sup>8)</sup>

-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고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행위
-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 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 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행위
-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담당 직원과 전화 및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 액수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그 합의금액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통해 보험회사와의 합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와의 화해계약을 주선하는 행위
- 보험회사 측과 과실비율 등의 손해사정 근거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급보험금을 놓고 협상을 하는 행위
- 보험회사 측과 손해사정 근거에 관하여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측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종용하거나 피해자의 이름으로 민원을 대신 제기하는 행위

○ 소비자들로서는,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 등이 보험료 반환이나 보험금 청구 등을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음

-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보수를 주고 보험료 반환이나 보험금 청구 등의 법률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음
-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도 소비자 유의사항의 하나로서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한 바 있음
  - 금융감독원은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권역별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였음

6) 보험업법 제188조

7)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

8)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217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24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 등.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한 사안들임

- 이에 의하면, 생명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의 하나로서,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과 만약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음<sup>9)</sup>

---

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9. 7),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 -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생명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